



통상 News Brief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SHIN & KIM International Trade Law Center

2020 Vol. 2

Contents

동향분석	안보와 경제: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전망	03
이슈진단		06
1.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하자	와 협정관세 적용 배제: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 .	06
2. 디지털 통상 규범의 발전과 시사점		10
2분기 주요 통상뉴스		13



동향분석

안보와 경제: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전망

백주현 고문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는 풀릴 것인가? 풀린다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풀릴 것인가? 먼저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경제 조치를 취한 배경을 살펴 보겠습니다. 2014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의 크림 자치 공화국 주민들에게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 70% 이상이 러시아에 대한 귀속을 선택하였고, 러시아는 즉시 크림을 자기의 영토로 하는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미국과 EU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유럽 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영토 탈취 행위라 보고 즉각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크림 지역은 소련시절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1954년 우크라이나 출신인 흐루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형제국 간의 우의를 증진 시킨다는 명목으로 크림 지역을 우크라이나에게 귀속시킨 것입니다.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된 후 크림지역이 다시 러시아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크라이나에서 친러계 대통령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2014년 2월 국회 결의에 따라 탄핵되어 대통령 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야누코비치 대통령

집권 이래 친서방파와 친러파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결과입니다. 게다가 친서방 프로셴코 신임 대통령은 EU 가입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안보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크림을 되찾아 오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크림합병조치와 같은 시기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계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무력 충돌이 발발한 후 2014. 9 민스크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현재는 휴전 상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충돌관련 냉전시대의 중요한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국가들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NATO의 독일 이동지역으로의 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NATO와 EU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왔고, 이제는 소련에 같이 소속해있던 우크라이나까지 파고들자 러시아가 힘으로 반발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이루어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언제 해제될지를 점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제재를 둘러싼 몇 가지 상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보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발틱해를 거쳐 독일까지 연결된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인 노르드스트림 2(Nord stream 2)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독일과 프랑스 기업 중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제재하겠다고 하여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대신 미국산 셰일가스를 더 많이 수입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안보 차원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이익증진을 위해 노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금년 초에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최종 전개 방향을 짐작하기 어려운 COVID-19 팬데믹 상황은 유럽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극도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중간 무역 및 체제 갈등,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에 암울한 먹장 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경제회복을 위해 러시아와의 교역과 투자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7월말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통화하고 민스크 휴전협정을 잘 지켜나가기로 한 것도 제재 해제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누가 이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대선이 끝나면 과도하게 뽀족하게 불거져 나왔던 미국의 입장이 조율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 다수의 국가들과 동시다발적 대결국면을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국력 낭비가 될 수 있고, 동맹국가나 우호적 국가들의 국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나 러시아, 중앙아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선 1989년 중국에서 천안문사태 이후 유엔에서 매년 추진되었던 중국 인권 결의안의 사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여년간 계속되었던 이 결의안을 둘러싸고 중국은 미국과 EU의 압박을 떨쳐내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EU가 더 이상 이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발표 후, 일주일 쯤 지나서 중국이 프랑스로부터 에어버스 항공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는 동안 중국과 프랑스는 물밑 접촉을 통해 실리적 합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나 기업은 이러한 상황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2014년부터 일반 사증면제 협정을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에는 2019년부터 서비스·투자 분야 FTA협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북극 항로 개설에 대비하여 발주한 9000억원 규모의 무르만스크와 캄차트카 환적시설 공사를 대우 조선해양이 수주한 바 있습니다.

북극항로 개설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아시아 국가는 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년 후로 다가온 북극항로 개설에 대비한 국내 계획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유럽지역을 오고 가는 물류를 취급할 항만과 관련 시설의 건설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미국과 EU가 영원히 러시아를 고립시킬 것만 같다는 환상에 쌓여 있는 동안 우리보다 발빠르게 실리를 취해나가는 국가들과 다른 나라 기업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도 치열한 외교전 수면 아래에서는 실리를 확보하는 각국의 움직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슈진단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하자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우도훈 변호사

2004년 한국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2011년 한-EU FTA, 2012년 한-미 FTA의 발효를 거쳐, 현재 56개국과 체결한 16건의 FTA가 발효되어 있고, 전체 교역 대비 FTA 교역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약 10여 년 간 관세당국과 수입자(납세의무자) 간에는 FTA와 관련된 분쟁이 자연스레 증가하였고, 이 중 대부분은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분쟁이 다른 조세쟁송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실체적 요건, 즉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분쟁보다는, 오히려 형식적 요건, 즉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주체, 인증수출자 번호 등 형식적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의 회신기한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주로 한국 관세당국이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통해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하자를 발견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FTA 규정은, 구체적 사안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 결정적인 부분에서 불확정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므로(예컨대,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수출국 정부가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 등), 개별 FTA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 수입 시점으로부터 관세당국의 사후검증 및 관세 등 부과처분, 전심 단계, 제1심 및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수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아직 우리 대법원이 FTA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선고한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기존의 FTA 등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서의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로는, (i)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회신을 지연하거나 당초 회신내용을 반복하여 최종 회신을 한 것과 관련하여, 회신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데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5644 판결, 이른바 ‘스위스산 금괴 사건’), (ii)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가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내부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부재 등을 이유로 회신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50399 판결), (iii)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직접운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0488 판결)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들 중 앞의 두 사안에서는, 대법원은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회신기한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적용의 예외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이해되나, 마지막 사안의 경우 원산지증명(직접운송 요건)에 있어 비교적 완화된 기준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은,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에 의해 작성되는 등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수출국 정부로부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던 이상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부산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21916 판결)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며 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¹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체의 문제를 ‘형식적 하자’의 문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원산지신고서 작성에 관한 문제는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실질적 하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형식적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은, 내국법인인 甲이 영국 법인인 乙 생산 물품을 싱가포르 중계무역업자인 丙을 통해 수입하였는데, 丙이 乙 발행 원산지신고서를 받지 못하여 丙 자신이 乙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甲이 乙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에 한국 세관은 영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 요청을 하였고, 영국 관세당국은 이에 대해, ‘(i) 대상 수입물품은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것이고, 乙의 인증수출자 자격 및 인증수출자 번호도 진정한 것이나, (ii) 1차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2차 원산지신고서도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 아니고 발급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즉, 위와 같은 영국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는, (i) 대상 수입물품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나 (협정관세 적용의 실질적 요건 충족), (ii)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것(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하자)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세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은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등에도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감면의 형식적인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등(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감면의 실질적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형식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을 부인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2016두63408 판결은, 원산지증명에 있어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주체가 인증수출자일 것이라는 점은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된 ‘협력의무’ 정도가 아니라 협정관세 적용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에 있어서는 FTA 및 국내법이 정한 일정한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은, 비협정국 수출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위험이 높은 분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세당국 입장에서 원산지신고서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면, FTA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경우를 효율적·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실제로도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에 따른 위반 사례 적발은 원산지 기준 불충족보다도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그러나 협정관세 적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형식적 하자만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사국들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 흐름을 확대한다는 FTA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²’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2016두63408 판결은,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체의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일 뿐 FTA가 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에 관한 형식적인 하자 일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직접운송 증빙서류에 관한 대법원 2016두45813 판결 및 2016두50488 판결은 원산지증명에 관한 형식적인 사항 충족 여부를 다소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체 이외의 형식적인 하자(특히, 보다 경미한 하자)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²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하여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현상

이슈진단

디지털 통상 규범의 발전과 시사점

김나영 전문위원

들어가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협상을 비롯한 다자차원의 디지털 논의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자 및 복수국간 협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세계 디지털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규범 형성이 주된 양상이지만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점차 더욱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협정 체결에 참여하고 있음에 따라 좀 더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디지털 규범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아래에서는 최근까지 발전한 디지털 통상 규범의 양상을 검토하고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디지털 통상 규범의 발전 양상

포괄적 및 선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그리고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USJDTA)은 기존의 전자상거래 국제규범에서 형성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디지털통상에 관한 규범 발전에서 규범적 구조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 이동을 보장하고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이러한 기본원칙에 대한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안보를 필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협정들은 모두 미국의 입장이 대거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크게는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들을 살펴보면 CPTPP는 미국 주도로 채택되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사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영토내 영업 허가 조건으로 소스코드

공개 조치를 금지하는 등 과거 중국 정부가 취하였던 규제들을 견제하는 조항들이 반영되었습니다.³ 더 나아가 USMCA는 CPTPP에 있던 서버 현지화(localization) 금지 규범의 합법적 공공정책목적(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데이터 이동 자유화 원칙을 더 강화하였고, 또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하여 해당 플랫폼내 제3자가 유통시킨 콘텐츠에 대한 면책 규정을 추가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공개를 금지하면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욱 자유로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USJDTA 또한 USMCA의 디지털 통상 챕터와 상당히 유사한데, 특히 특정 암호화 기술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디지털 제품에 차별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갈수록 미국 국내 법규와 미국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의 입장이 더욱 강력히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기업 입장에서 더욱 자유로운 디지털 통상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는 하나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국적의 기업들인 현 상황⁴에 비추어 우려스럽습니다. 디지털 산업은 상당 부분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다는 그 특성상 지나치게 강력한 시장 자유화는 기존에 시장을 지배하던 기업들만 더욱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안적 디지털 협상

싱가포르를 지난 2020년 6월 뉴질랜드, 칠레와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체결을 시작으로 호주와도 디지털경제협정(SADEA)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협정문은 모두 1) 디지털 통상 증진, 2) 신뢰 가능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혁신 도모, 3)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신뢰 구축 및 디지털 경제 참여를 위한 기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디지털 무역 원활화를 지향하면서도 신뢰 구축과 참여 확대를 균형 있게 추구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SMEs) 조항과 디지털 참여도 향상(digital inclusion)을 위한 조항이 대표적 예입니다. 그 외에도 기존 디지털 규정들에 비해 신규 이슈들이 상당히 추가되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명(digital identities), 전자 인보이싱(e-invoicing), 핀테크(fintech),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 혁신(data innovation)을 위한 규정은 기존 CPTPP나 USMCA, USJDTA에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거나 부재하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진화 및 변화하는 디지털 무역 환경에 부합하도록 보다 업데이트된 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³ 2015년 초 중국 정부의 소스코드 공개 요구 방침이 발표되자 미국 등은 거세게 반발하였고, 이후 미국은 소프트웨어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에 대한 이전이나 접근 요구를 금지하는 원칙을 TPP 협정문에 최초로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⁴ 실제로 2019년 기준 세계 최대 디지털 기업 상위 10위 중 8개가 미국 국적입니다. 자세한 기업 순위는 아래 자료 참고:

Forbes, "Top 100 digital companies: 2019 Ranking," Press Release Database: <https://www.forbes.com/top-digital-companies/list> (접속일: 2020년 8월 10일)

뿐만 아니라 해당 협정들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규정과 같이 USMCA와 USJDTA에서 추가되었던 일부 조항들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극히 일부 국가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지금, 사실상 해당 소수의 기업들에 대한 우대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항을 본문에서 제외시킨 것은 현재로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사점

한국은 국경간 데이터 흐름에 대하여 최초로 규정한 FTA인 한미FTA의 당사자입니다. 한미FTA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에서 데이터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방해하는 장벽들을 지양하도록 하였고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사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당시 미국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자유화 규범은 이후 USMCA와 USJDTA를 포함하여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강력해졌음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국내 디지털 산업을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전반적인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주도의 협상에 이끌려 가기보다는 좀 더 균형 있는 입장에서 디지털 협상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디지털 대기업의 대부분이 미국에 포진해 있는 지금 한국은 싱가포르의 사례에서처럼 신뢰할 수 있는 국제 디지털 시장을 지향하는 좀 더 중립적인 협정들을 적극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방적인 디지털 시장을 추구하여 국내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면서도 일부 다국적 해외 기업들에게만 우호적이지 않도록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DEPA 및 SADE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의 첫 디지털 협정 체결 준비는 그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큼니다. 이번 6월 22일에 협상이 개시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은 한국이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이며, 이번 협상의 개시는 한국이 국제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동참하여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분기 주요 통상뉴스

(2020.05.01. – 2020.07.31.)

미국, 특정 국가의 전기공급장치 및 정보통신기술 장치에 대한 수입금지 행정명령 발동 (05.01./05.13.)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수입산 전기장치와 ITC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하였다. 5월 1일에는 해외의 적(foreign adversaries)과 거래관계에 있는 대용량 전기공급장치(bulk-power system electric equipment)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동하였고, 13일에는 정보통신기술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은 WTO 상품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은 GATT 제21조를 근거로 미국의 조치는 정당화되며, 국가안보 이슈는 상품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Key word] #미국 #전기 #정보통신기술 #국가안보 #국가비상사태 #GATT21
#Section 232 #ICT

미국, 주요 전자변압기 및 그 부품에 대한 제232조 조사착수 및 진행 (05.04.)

미국 상무부는 변압기 코어 라미네이션(laminations for stacked cores for incorporation into transformers), 변압기 코어(stacked and wound cores for incorporation into transformers), 전자 변압기(electrical transformers) 및 변압조절기(transformer regulators) 등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미 정부는 변압기 코어와 라미네이션 같은 전기강판(electrical steel)은 송전 및 전력배분(power distribution transformer)을 위한 필수 부분품으로 미국의 전기 인프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7월 1일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내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전자변압기 부품의 수입은 미국 전기 시스템이 효과적이고 작동가능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변압기에 대한 미국내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어 광범위한 제232조 조사대신,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제품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Key word] #미국 #제232조 #무역확장법 #국가안보 #전자변압기 #송전기 #전기강판
#Section232

코로나-19에 대응한 APEC 통상장관들의 성명서 발표 (05.05./07.25.)

21개국으로 구성된 APEC 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성명서(Statement)를 발표하였다. 해당 성명서에는 필수적인(essential)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왜곡을 최소화하자는 내용과 더불어 코로나19로 발생하는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APEC의 디지털 의제를 새롭고 혁신적인 시각에서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7월 25일 APEC 통상장관들은 5월에 발표한 성명서의 이행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WTO 무역원활화협정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 의료장비, 식품과 농산물 등 필수품의 이동을 원활화하는 선언서(Declaration)를 채택하였다.

[Key word] #APEC #COVID-19 #필수재 #긴급조치 #디지털경제 #의료장비 #식품 #농산물 #무역원활화

WTO 사무총장 사임 발표(05.14.), 새로운 사무총장 선출절차 진행 (06.08.)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êdo)는 8월 31일자로 예정보다 1년 일찍 WTO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새로운 사무총장이 WTO의 제12차 각료회의를 이끌고 WTO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였다. 올해 6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제12차 각료회의는 팬데믹으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이에 나이지리아, 케냐, 영국, 이집트, 한국, 멕시코,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8개 국가에서 사무총장 후보를 내고, 2달에 걸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9월 초에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의장 주도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의장,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 의장이 함께 모여 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3차례의 협의(consultations)를 진행한 후, 최종 2명의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WTO 회원국들 모두의 동의를 얻은 한 명의 후보가 11월에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Key word] #WTO #사무총장 #제12차 각료회의 #WTO Ministerial Conference 12 #MC12

미국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es)관련 제301조 조사확대 개시(06.02.) 및 OECD 협상 참여중단 통지(06.17.)

미국 무역대표부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를 고려중인 10개의 무역상대국-호주, 브라질, 체코, EU,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을 대상으로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였다. 또한 지난해 착수한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조사에서는 프랑스의 조치가 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2021년 1월부터 프랑스산 제품에 대하여 1억 3천만 달러(1.3 billion)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였다.

나아가 미국 재무부장관인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하락 대응에 집중하기 위하여,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디지털세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유럽재무장관들은 OECD에서 디지털세 관련 논의를 단계적으로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Key word #미국 #제301조 #디지털서비스세 #디지털세 #Section301 #Digital Service Taxes

WTO 수산보조금(Fisheries subsidies) 협상 재개(06.25/07.21.)

팬데믹으로 협상이 연기되었던 WTO 수산보조금 규정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WTO 회원국들은 불법, 미신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보조금을 제거하고, 과잉어획 및 과잉생산에 기여하는 특정 보조금(certain subsidies that contribute to overfishing and overcapacity)을 금지하기 위한 규범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6월에는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의장 초안이 마련되었고, 7월에는 의장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9월부터 다음 단계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2차 각료회의가 2021년으로 연기되면서, 본래 협상종료 시한인 2020년 12월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의장 초안에는 논쟁이 되었던 이슈인 보조금 상한제(capping subsidies), 특별하고 다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Key word #수산보조금 #WTO #보조금 #불법, 미신고, 비규제 어업 #과잉어획 및 과잉생산 #subsidy #fishing

미국,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중지발표(06.29.) 및 행정명령 서명(07.17.)

상무부는 현재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부여되던 수출 허가 예외가 중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홍콩이 누리던 특별지위의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중국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민감한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국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높아졌으며, 홍콩의 자치권이 손상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홍콩이 누리고 있던 특혜대우들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Key word] #미국 #중국 #홍콩 #특별지위 #국가보안법 #special status
#national security law

USMCA 정식발효(07.01.) 및 노동 알루미늄 등 관련 이슈 부각

7월 1일 USMCA가 정식발효 되었다. 하지만 USMCA 이행을 둘러싸고 쟁점사항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우선 USMCA 이행을 위한 멕시코의 2019년 노동법 개정의 합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멕시코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06.25.). 개정된 멕시코 노동법에는 USMCA에서 언급되었던 노동자 개개인의 자유로운 비밀투표에 따른 노사단체간협약의 도입과 독립된 노동법원의 설립을 포함하고 있다.

USMCA에 따른 첫번째 협의(consultation)도 시작되었다(07.01.). 미국은 미국산 바이오테크 상품의 수입을 거부한 멕시코의 조치에 대한 협의 개시를 요청하였다. USMCA의 농업챕터에서는 바이오테크 상품의 무역을 장려한다(encourage)고 언급되어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알루미늄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07.30). USMCA 협상에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제232조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상품에 부과된 보복관세도 함께 철회하기로 합의하였다.

[Key word] #미국 #캐나다 #멕시코 #USMCA #노동 #농업 #바이오테크 #알루미늄
#철강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

세종 국제통상법센터는 빠르고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통상질서에 시의성있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유) 세종의 부속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법무법인(유)세종이 쌓아온 통상역량을 결집하여, 통상, 투자,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이슈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종의 고객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구성원

센 터 장 김두식 (대표변호사)

고 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주일대사) | 백주현 (전 주카자흐스탄 대사, 주러시아 경제참사관) |
김준동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김도열 (전 인천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국제통상 전재민 (변호사) | 윤영원 (변호사) | 김재희 (변호사) | 이상협 (변호사) | 오미연 (캐나다, 미국변호사) | 박경진 (박사, 전문위원) | 김나영 (전문위원)

무역구제 강정수 (공인회계사) | 조명성 (공인회계사) | 고영해 (미국회계사) | 장슬기 (미국회계사) | 장유림 (영국회계사)

관 세 우도훈 (변호사) | 한정화 (관세사) | 정진용 (관세사)

연 락 처 02-316-4114 www.shinkim.com